

의안번호	2209906
의 퇴 인	이상희 의원
회 답 일	2025. 6. 16.
추계번호	25A2312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이차전지산업 혁신위원회설치, 통계의 작성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3,400만원, 2031년 6,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8,600만원(연평균 7,72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71	—	—	—	—	71	14.2
이차전지산업 혁신위원회설치(안 제7조)	11	11	11	11	11	55	11
통계의 작성(안 제10조)	52	52	52	52	52	260	52
합 계	134	63	63	63	63	386	77.2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이차전지산업 혁신위원회)	-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거나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3	안 제9조(이차전지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정부는 매년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통계의 작성)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1조(이차전지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이차전지산업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된 이차전지산업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12조(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7	안 제13조(이차전지산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용수·폐수·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3.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4.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8	안 제14조(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실증기반 구축사업 3.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4.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등 사업화 지원사업 5.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9	안 제15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 정부는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의 국산화 등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16조(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지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원 -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자문 -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11	안 제17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3.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과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 5.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2	안 제18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함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3	안 제21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1. 이차전지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 2.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체육시설·주택 등 각종 주거환경 개선시설의 설치 -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내 설비투자 -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술개발사업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8.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혁신발전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안 제22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제1항) -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5.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의무규정
15	안 제23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음.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수도권 외의 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24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 정부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연대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7	안 제25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시책)	○ 정부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8	안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1항)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 1.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 － 2.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 － 3. 재직자의 직업교육, 능력개발 및 향상 － 4.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 － 5.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 － 6.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 7. 해외 및 수도권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19	안 제28조(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0	안 제29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21	안 제30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2	안 제31조(조세에 관한 특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34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 1.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2.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의 구축 및 운영 － 3.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의 핵심적인 필요인력에 대한 국가 핵심인재 지정 및 지원 － 4.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내 원료·소재·부품·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및 부지 할당과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재량규정
24	안 제38조(생산보조금의 지급)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생산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생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 1. 주요 원자재의 수입대체 또는 국산화에 따른 가격차이 보전 비용 － 2. 폐수처리시설 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고비용 요소에 대한 운영 비용 － 3. 공급망 취약 품목의 내재화 또는 국내 생산 전환에 따른 초기 부담 비용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4. 친환경 인증 및 공정 개선을 위한 부대 비용	
25	안 제39조(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1. 국내에 이차전지산업 관련 원료·소재·부품·장비 생산시설을 갖출 것 - 2. 산업용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 총 생산비용의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공정을 보유할 것 - 3.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할 것	재량규정
26	안 제41조(이차전지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생산·가공·제작을 위한 공장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제작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7	안 제4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 또는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생산·가공·제작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28	안 제43조(중소·중견기업의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 2. 시장수요·판로·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 3. 연구개발 지원 - 4. 자금의 보조·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 5.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 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9	안 제46조(고용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0	안 제47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음(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제3항) ○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31	안 제49조(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2	안 제7조(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	—
3	안 제9조(이차전지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안 제10조(통계의 작성)	○	—
5	안 제11조(이차전지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6	안 제12조(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X	
7	안 제13조(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X	
8	안 제14조(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X	
9	안 제15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X	
10	안 제16조(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	X	
11	안 제17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X	
12	안 제18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X	
13	안 제21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X	
14	안 제22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X	
15	안 제23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X	
16	안 제24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X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7	안 제25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시책)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18	안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X	
19	안 제28조(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X	
20	안 제29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X	
21	안 제30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X	
22	안 제31조(조세에 관한 특례)	X	
23	안 제34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X	
24	안 제38조(생산보조금의 지급)	X	
25	안 제39조(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26	안 제41조(이차전지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27	안 제4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28	안 제43조(중소·중견기업의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X	
29	안 제46조(고용에 대한 지원)	X	
30	안 제47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X	
31	안 제49조(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X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의 이차전지 관련 재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

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제정안	세부사업(내역)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안 제13조(이차전지 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7,20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청주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3,663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10,85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울산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3,500
안 제14조(이차전지 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차세대이차전지상용화 지원센터	3,000	9,680	4,670	1,650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공정고도화 플랫폼구축	—	—	—	2,400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구축지원	—	3,391	4,521	6,670
	전기차배터리통합관리체계고도화사업(정보화)	—	—	—	475
	EV배터리집합기술실증기반구축	—	—	1,500	1,920
	이차전지 실시간고도분석센터	—	—	2,500	3,200
	EV용고에너지밀도리튬이온전지화재안전성평가기반구축	—	—	3,500	6,400
	저가격·장수명나트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	—	2,600	5,850
	실리콘고함량음극극판및셀적용기술개발(R&D)	—	—	3,500	5,850
	이차전지첨단전략산업글로벌협력지원(R&D)	—	—	2,000	2,000
	인체밀착형웨어러블기기용전고체리튬고분자배터리개발(R&D)	—	—	—	5,000

제정안	세부사업(내역)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 및 저장취급시설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	—	—	800
	소재부품기술개발(R&D)(첨단전략 산업초격차(이차전지))	3,600	6,050	6,000	6,100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 조기술개발(R&D)	—	—	6,140	17,850
안 제16조(중 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 원)	차세대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3,000	9,680	4,670	1,650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구축지원	—	1,500	5,000	3,500
	이차전지실시간고도분석센터	—	—	2,000	2,000
안 제17조(국 제협력 등의 지원)	이차전지첨단전략산업글로벌협력 지원(R&D)	—	—	—	3,290
안 제21조(이 차 전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에 대 한 지 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 축지원(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7,20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 축지원(청주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3,663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 축지원(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 원)	—	—	—	10,85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 축지원(울산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3,500
안 제22조(이 차 전 지 혁 신 클 러 스 터 산 업 기 반 시 설 의 조 성 및 운 영 지 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 축지원(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7,20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 축지원(청주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3,663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 축지원(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 원)	—	—	—	10,85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 축지원(울산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3,500

제정안	세부사업(내역)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안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배터리아카데미구축	—	—	5,710	6,000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조선산업현장전문인력양성)	16,280	8,000	4,000	4,000
안 제34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7,20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청주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3,663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10,85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울산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	—	—	3,500

주: 제정안의 두 개 이상의 조문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을 모두 포함하므로 중복이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비용추계 대상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
- 제정안의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하여 동 계획의 수립에 7,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유사 연구사례로는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 마련 연구용역」(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9,500만원),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 (7-Tool 중심) 변화 및 정책적 대응방안 수립 용역」(한국화학연구원, 2024

년, 4,900만원), 「대전시 이차전지산업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재단법인 대전 테크노파크, 2024년, 6,800만원) 등

-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7,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2]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71	—	—	—	—	71	1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이차전지산업 혁신위원회(안 제7조)

□ 비용추계 대상은 “이차전지산업 혁신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위원회 설치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

- 민간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를 곱한 값에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
- 민간위원의 수는 11명, 회의 개최 횟수는 분기당 1회로 가정
 - 안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과 제7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대통령과 간사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3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호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위원의 정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위원의 수는 정원의 과반인 11명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이차전지산업 혁신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500만원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이차전지산업 혁신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이차전지산업 혁신위원회 설치 (안 제7조)	11	11	11	11	11	55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통계의 작성(안 제10조)

- 비용추계 대상은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에 따른 비용”으로 함
 - 제정안의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하여 동 조사에 5,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 유사 연구사례로는 「차세대 이차전지 분류체계 수립 및 연계산업 조사·분석」(한국화학연구원, 2024년, 5,400만원), 「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정비 연구용역」((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4년, 4,950만원) 등
- 제정안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경우 향후 5년간 연 2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통계의 작성 (안 제10조)	52	52	52	52	52	260	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